

첨부서류	1. 전문인력의 최종 학교 및 최종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[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는 영문 또는 국문(공증) 졸업증명서 사본을 말합니다] 2. 전문인력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3. 전문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(국민연금·건강보험 가입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말합니다)
------	---

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작성방법

- ①의 “전문인력” 란에는 「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연구산업별 인력요건을 갖춘 인력의 현황을 작성합니다.
- ②의 “직위” 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부여한 직위 또는 직급(예: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 등)을 작성합니다.
- ③의 “소속 부서” 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의 소속 부서명(예: 자동화제어연구실, 연구1실 등)을 작성합니다(다만, 신고기업이 세부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어도 됩니다).
- ④의 “최종 학교” 및 ⑤의 “최종 학위” 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의 최종 학교명 및 최종 취득학위를 작성합니다.
- ⑥의 “전담업무” 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이 전담하고 있는 연구산업 관련 업무를 작성합니다.
- ⑦의 “자연계인력 해당 여부” 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이 「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1호가목1)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합니다.
- ⑧의 “국가기술자격” 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이 「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1호가목2)에 따라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종의 종류를 작성합니다.

※ 작성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,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